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8. 6. 27. (수)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도입 관련 토론회

□ 행사 개요

- (목적)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적용대상, 산출산식 등) 관련 미술계 의견 수렴
- (일시) '18. 6. 27.(수), 14:00~17:30
- (장소)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미술인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좌장: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개회	14:00~14:05('5)	인사말	
	주제 발표	14:05~14:30('25)	✓ 기조발제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 발표 -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14:30~15:30('60)	✓ 발제1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작가 의견 - 김남표(한국미술협회 작가), 양철모(미술작가)	
			✓ 발제2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 김성호(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	
			✓ 발제3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평론가 의견 - 김이순(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홍태림(미술평론가)	
		✓ 발제4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 심지언(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장),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휴식	15:30~15:40('10)			
2부	종합 토론	15:40~17:30('110)	- 종합토론 - 질의응답	

내 용

제1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발제

1	기조발제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19	발제1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작가 의견 김남표(한국미술협회 작가)
23	양철모(미술작가)
29	발제2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김성호(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
37	발제3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평론가 의견 김이순(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39	홍태림(미술평론가)
45	발제4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심지언(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장)
48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제2부 종합 토론

- 종합토론
- 질의응답
- 기타 정책 제안 등

기조발제 ||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황 승 흠
(국민대학교 교수)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황 승 흠 (국민대 법대 교수)

목차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

추진경과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이란?
무엇이 바뀌었나?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 지급대상
작가에 대한 창작대가기준 적용
왜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인가?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대가 적용범위

용역제공대가[인건비]

용역제공대가[인건비]란?
용역제공대가의 산출 산식
예술가 등급과 월 기준 단가
전시회 산정 기준
참여율 산정기준
4대보험과 예술인[프리랜서]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란?
작가 대상 전시권 사용료 산출 산식
전시배포복제권 사용요율 산정
작가별 저작권사용료 배분 기준
큐레이터 대상 편집권 산출 산식
평론가 대상 복제배포권 산출 산식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

3

추진경과

미술인 보수 지급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5. 7)

작가비 지급 세부기준안(작성) 및 시뮬레이션 (2016. 3 ~ 7.)

시범운영 세부기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6. 9)

세부기준안 마련 및 시범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2016. 3 ~ 2017. 3.)

작가비 제도 국 · 공립 미술관 시범운영 적용(2017. 5 ~ 12)

기존 미술작가보수제를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으로 확대개편
(2018. 4.2.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발표 ~)

4

NHN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이란?

2017 작가보수제 → 2018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으로 확대개편

○ 미술 전시에 필요한 작품의 제작·제공, 전시기획·구성 및 평론 등을 위한 창작아이디어, 용역 등을 제공한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작가보수제도와 창작대가기준과의 차이점

	작가보수제[작가비]	창작대가기준
지급대상	작가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성격	작가보수	용역제공대가+저작권사용료
적용대상	국공립미술관 전시	국공립미술관 전시+정부의 전시보조사업

5

무엇이 바뀌었나?

2017 작가보수제 시범적용(안)

	작가보수	
산출 산식	월 기준단가 x 전시종류에 따른 참여율 x 전시기간 x 전시종류 x 예산가중치	
작가	기준	월기준단가
	A 개인전 4회 이상	4,722,536
	B 개인전 4회 미만	2,367,724
큐레 이터	해당 없음	
평론 가	해당 없음	

2018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용역제공대가*		저작권사용료
산출 산식	월 기준단가 x 창작기간(월) x 참여율		1일기준금액 x 전시일수 x 작가 별 배분율
작가	기준	월기준단가	(1) 1일기준금액 x 전시일수 x 작가 별 작품수 / 총작 품수 (2) 2,000원 x 전시 일수 x 작가별작 품수 (3) (1), (2) 중 큰 금액
	가 전시회 15 회 이상	6,338,646	
	나 전시회 5 회 ~ 15회	4,860,388	
	다 전시회 5 회 미만	3,249,006	
큐레 이터	작가와 같은 기준 적용		20,000원 x 전시일 수 / 참여큐레이터 수
평론 가	해당 없음		20,000원 x 200자 원고지매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가능

6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의 지급대상

1. 작가

신작제작+구작변형



신작+구작+사후출품



2. 큐레이터

전시회기획·구성



전시회구성사용



3. 평론가

원고사용



7

ARTS

작가에 대한 창작대가기준의 적용

신작 제작



구작 변형



구작 출품



사후 출품



유족

8

ARTS

왜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인가?

- 미술 전시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작가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에게도 **정당한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할 필요성**
- 모호한 성격의 작가 보수를 **용역 제공 대가와 저작권 사용료로 이원화함으로써 산출 산식 근거의 명확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산출 산식 변경**
-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성격의 처리가 가능해져 **사회보장 조치(산재+연금+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 기반 마련**
-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명시로 **구작 및 사후출품에도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이 가능하며 **평론가에게도 저작권 기반의 원고료 지급 근거 마련**
- 용역 제공 대가와 저작권 사용료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예술가에게 유리**

9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국·공립 미술관 전시
-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전시지원사업



정부의 직접 사업
국고보조사업

사립미술관 등 민간영역은 자율 적용

10

용역제공대가[인건비]

11

용역제공대가[인건비]란?

정의

○ 국·공립기관의 시각예술전시사업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각예술전시 보조 사업에 인적 용역을 제공한 시각예술가에게 지급되는 대가[인건비]

지급대상



작가

큐레이터

작가 용역제공대가

○ 작가가 전시회를 위해 새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인건비]

큐레이터 용역제공대가

○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기획 및 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인건비]

평론가

용역제공대가 없음



저작권 사용료만 지급

12

용역제공대가 산출 산식

용역제공대가 = 월 기준 단가 X 창작 기간(월) X 참여율(%)

월 기준 단가

- 전시 횟수에 따라 예술가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기준 단가 적용
- 월 기준 단가 = 전시회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학술용역단가기준 금액 X 2
- 학술용역단가 기준 중 책임연구원급-연구원급-연구보조원급 등 3개 기준 사용
- 전시 횟수 기준 : 등록미술관의 개인전을 1회 기준으로 가증 또는 가감 방식

창작 기간(월)

- 1개월 미만 시 일할 계산

참여율(%)

- 작가 또는 큐레이터가 수행하는 전체 예술활동 중에서 해당 전시 사업 또는 전시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활동이 차지하는 비율

예술가 등급에 따른 월 기준 단가

	월 기준 단가('18년)	작가	큐레이터	비고
가급	6,338,646원	전시회 15회 이상	전시회 기획·구성 15회 이상	책임연구원급(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에 해당하는 기준 단가 적용
나급	4,860,388원	전시회 5회 이상 15회 미만	전시회 기획·구성 5회 이상 15회 미만	연구원급(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에 해당하는 기준 단가 적용
다급	3,249,006원	전시회 0.25회 이상 5회 미만	전시회 기획·구성 0.5회 이상 5회 미만	연구보조원급(대학원생 수준의 기능 보유)에 해당하는 기준 단가 적용

전시회 및 전시회 기획·구성 0회는 다급의 50%로 월 기준 단가 적용

SKN

전시회 산정기준 *

구분	작가	산정기준	큐레이터	산정기준	비고
등록미술관	개인전	1회	전시회 기획·구성	1회	20인 이상의 단체전은 산정기준의 50% 적용
	단체전(20인 한도)	0.5회			
미등록 국내 미술관 · 비영리 전시공간	개인전	0.5회	전시회 기획·구성	0.5회	갤러리·화랑은 산정기준의 50% 적용
	단체전	0.25회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에서의 초대·기획전	개인전	2회	전시회 기획·구성	2회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 리옹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상하이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과 동급의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
	단체전	1회			
일반 해외 전시회의 초대·기획전	개인전	1회	전시회 기획·구성	1회	
	단체전	0.5회			

* 조각·서예·공예 전시회는 가중치 부여 검토

15

15

참여율 설정 기준

참여율의 의미

○ 참여율은 예술가가 참여하는 여러 개의 전시 사업 중에서 해당 전시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시간의 비율을 말하며, 1개의 전시 사업에만 참여하는 경우 예술활동에 실제로 투입한 시간의 비율을 말함

참여율 100%의 의미

○ 예술가의 최대 용역 제공 가능 시간 전체 > 용역 제공 → 이론적 차원의 참여율 100%
○ 참여율이 100%이면 고용에 준하는 관계 > 작품의 소유권이 전시회 주최 측으로 넘어간다고 해석 > 저작권 사용료는 지급할 수 없음

참여율 설정 기준

○ 참여율은 전시 예산에 따른 지급 가능 금액의 한도와 예술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회 주최 기관과 예술가와의 협의에 의해서 설정

16

16

4대 보험 제도와 예술인[프리랜서]

자격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예술인 [프리랜서]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근로자
요율	• 본인 0.85 ~ 1.15%	• 사업주 0.7 ~ 3.1%		• 사업주 0.65% + @ • 근로자 0.65%	• 본인 6.24%	• 사업주 3.12% • 근로자 3.12%	• 본인 9%	• 사업주 4.5% • 근로자 4.5%
의무가입 여부	임의 가입	원칙적 의무가입		원칙적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 예술인[프리랜서]에게 용역제공대가[인건비] 지급 → 현재 고용보험 제외 3대 보험 적용
- 예술인[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특례] → 본인부담금의 50%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
-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나, 예술인 특례 도입예정 (2020년)
- 전시보조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예술인[프리랜서]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용역제공대가에 근거하여 별도로 예산편성가능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란?

정의

○ 예술가의 창작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지급하는 사례금

지급대상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저작권의 내용



작가 > 전시권, 복제·배포권(도록 등), 전송권
큐레이터 > 편집저작권
평론가 > 복제·배포권, 전송권

저작권 사용료 지급대상 작품



신작

구작

사후출품

소장품의 경우도 작가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 소장품은 소유권에 의해 전시·복제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35조] 저작권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님

작가 대상 전시·복제·배포·전송 저작권 사용료 산출 산식

저작권 사용료 = 전시회당 1일평균매출액 X 사용요율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

- 저작권 사용료의 산출 산식은 기본적으로 추정매출액에 사용 요율을 곱하는 방식
- 공연은 1회 공연을 기준으로 하고 공연횟수를 곱하는데 이를 원용하여 전시는 1일 전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전시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

전시회당 1일 평균 [추정]매출액

- 전시회당 1일 평균 매출액 = 평균 입장료 X 1일 평균 유료관람객 수
- 전시회당 1일 평균 유료관람객 수 = 평균 유료관람객 수 ÷ 평균 전시일 수
- 전시회당 평균 유료관람객 수 = 전체 유료관람객 수 ÷ 연간 총 유료전시 횟수
- 전시회당 평균 전시일 수 = 미술관 당 연간 평균 개관 일수 ÷ 평균 전시횟수

저작권 사용 요율의 선정기준

사용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사용 요율은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객관적 기준이 없음
- 음악저작물의 사용 요율 사례 : 공연(1~3%), 방송(0.35~4%), 웹 캐스팅(2.5~4%), 상업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복제/배포(9%) 등 상이한 기준이 사용됨
- 전시에산규모 · 사용자의 부담 정도 · 음악저작물의 사례를 고려하여 3~5%의 범위에서 사용 요율 수준 검토
- 전시회당 1일 평균 추정매출액에 사용 요율을 곱하여 1일 저작권사용료 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예 전시 일수를 곱하면 작가별로 배분되기 직전 단계의 저작권 사용료 수준이 결정됨

21

작가별 저작권 사용료 배분 기준

작가별 배분기준 (1)

산식 $\text{작가별 배분액} = 1\text{일 평균 매출액} \times \text{사용 요율} \times \text{전시일수} \times \text{작가별 배분율}$
 $\text{작가별 배분율} = \frac{\text{작가별 작품 수}}{\text{총 작품 수}}$

- 작가별로 작품 수에 비례하여 사용료 지급
- 미술작품은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품이 유리하고 대작·설치작품은 불리

작가별 배분기준 (2) $\text{작가별 배분액} = 2,000\text{원} \times \text{전시일수} \times \text{작가별 작품 수}$

- 전시회당 작품 수를 40편으로 가정하여 작품 1개의 저작권사용료를 2,000원으로 산정
- 작품당 저작권사용료의 최소 금액을 정하여 배분액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경우를 방지

작가별 배분기준 (3) 작가별 배분액은 배분기준 1 2의 적용 결과 중 높은 금액으로 함

- 각 산식에서 작가에게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유리한 요소만을 선택

22

큐레이터 대상 편집 저작권 사용료 산출 산식

큐레이터별 저작권 사용료 = 1일 저작권 기준금액(20,000원) X 전시일수 ÷ 참여큐레이터 수

큐레이터의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여 큐레이터별로 같은 금액 지급

1일 편집 저작권 기준금액(20,000만원) 산출 근거

○ 큐레이터의 전시회 기획·구성은 작가의 저작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편집저작권을 발생 시키는데 작가의 창작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저작권법에서 실연자에 포함시킴)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

○ 큐레이터의 편집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요율은 저작자에 권리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의 보상비율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음악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1:0.5 수준임

○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는 실연자에 포함되나 일반 실연자와 구분되므로 전체 실연자에 대한 보상 중 일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부분이 지휘·연출·감독하는 자에 대한 보상분이라 할 수 있음. 일반 실연자와 지휘·연출·감독하는 자의 보상분의 비율은 1:1로 봄

○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1일 편집 저작권 사용료 기준 금액은 작가의 1일 저작권 기준금액에 대한 실연자에 준하는 권리보상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20,000원으로 제시함

23

지식

평론가 대상 복제·배포·전송 저작권 사용료 산출 산식

평론가의 복제·배포 저작권 사용료 = 20,000원 X 200자 원고지 매수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기준으로 평론가의 복제·배포 저작권 사용료 산출 산식을 마련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

○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의 경우 :

○ 전편 이용 시 : 165,170원

○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원고지 5매 미만은 20,000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 중 최대 기준인 200자 원고지 1매당 20,000원을 기준 금액으로 제시

24

지식

적용 시 애로사항

- 창작대가기준적용 시 전시 비용 상승으로 전시 횟수 감소 우려
- 특정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될 우려
-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 중 용역제공대가를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4대 보험 적용 관련 기관의 행정처리 업무 증가
-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와 관련하여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전시 시 무료로 대여하던 관행이 유지되기를 희망 → 소장품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님

향후 계획

-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 마련 및 시범적용 (2018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관리지침」 반영 (2019년)

25



감사합니다.

26



**발제1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작가 의견**

김남표(한국미술협회 작가)
양철모(미술작가)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 대하여

김남표(한국미술협회 작가)

예술분야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사회는 예술의 기본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동의를 통해 지원하고 개입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에 공공의 지원이나 개입이 있다는 것은 정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원과 개입을 받는 예술 자체의 관점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부합한 정책인가라는 점이고, 두 번째의 관점은 사회적 관점에서 예술정책이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한 공정한 지원과 타당한 개입인가라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예술은 산업의 일환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 세계경제의 한 축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예술은 예술 자체의 고유한 미학적 산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적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의 시장화, 예술의 산업화는 긍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 - 예를 들어 예술의 순수성에 반하는 상업화 결과 - 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관이 지급하는 '미술전시 창작대가'와 관련된 예술정책은 예술이 시장화되고 상업화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중요한 예술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인 것이다.

갤러리, 화랑의 대다수가 상업화되고, 그 결과 비상업적인 예술의 형태, 즉 일시적인 형태의 미술이라든지, 예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의 형태는 미술시장 내 다양한 전시로 유입되는 기회가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미술의 창작활동에 영향을 주어 예술가 자신의 자기검열로 인한 미술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미술시장의 확대로 미술관이 축소되거나 그 역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술시장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미술의 형태를 지원, 배급하는 더 큰 의미로서 미술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술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상업적인 형태의 미술 작업, 즉 순수 미술형태의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를 꾸준히 발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미술시장에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를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수면 위에 널리 알려진 소수의 작가들 중심의 미술관전시로 진행이 된다면 공공미술관의 역할과 그 의미는 미술시장 중심의 제도에서 더 축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제도권의 아티스트와 작품을 찾아내고 그것이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지속적인 형태로 공정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공공의 미술관으로서, 미술시장과 차별된 제도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된다.

몇 년 전에 유명한 미디어작가의 진정 어린 고백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면서 미술관전시와 관련하여 아티스트의 현실적인 고충을 들은 바 있다. 핵심은 비영리 전시 공간인 미술관 전시를 준비 하면서 발생하는 창작 비용 대비 미술관이 제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미술관 전시가 오히려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미술관 전시의 초대는 작가에게 그 동안의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인 동시에 그 예술성이 전시에 실현되는 공식적이고 공적인 예술행사라는 측면에서 작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뜻깊은 기회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미술시장의 갤러리나 화랑의 전시는 전시기간에 작품이 판매가 되거나, 혹은 될 수 있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가능하지만 미술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관 소장은 또 다른 과정과 심의가 필요로 하고, 미술관 전시에 사용된 작품이 때로는 갤러리에서 수용하기 힘든 형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작가는 미술관에서 제시한 전시의 컨셉을 적극 수용하기 보다는 미술관 전시 이후에도 일반 갤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관의 '아티스트비'는 미술관 전시에 있어서 외형적이든 내재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안은 기존의 작가보수에서 미술전시창작대가기준이라는 명칭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1. 미술작가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에서 전시기획을 하는 큐레이터 혹은 기획자와 전시 평론을 제공하는 평론가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된다는 개정안
2. 전시될 창작 작품 외에 그 작품의 이미지와 관련한 저작권료가 세부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
3. 세부적인 산출산식에 있어서 전시기간에 따른 비용산출 방식에서 창작기간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

4. 작가의 활동 연혁을 기준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지급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개정안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용역제공대가(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이다.

용역제공대가=월기준단가 x 창작기간(월) x 참여율,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월 기준단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단가 기준액을 적용하다 보니 학술용역단가 기준인 책임연구원급-연구원급-연구보조원급이라는 세 개의 등급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시 이 세 개의 등급을 미술에 적용하여 등록된 미술관 전시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전시횟수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가 등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 개의 등급, A:개인전 4회 이상 B:개인전 4회 미만이라는 기준의 경우 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대다수는 A등급에 해당될 것이고, 참여하는 작가 중 소수 몇 명의 신진작가만이 B등급이 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 등급의 기준은 방식은 사실 큰 의미 없이 참여하는 작가모두가 같은 '월 기준단가'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전 3회와 개인전 4회는 두 배의 월 기준단가이다.

개정안 역시 등록된 미술관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준의 전시 횟수 조건을 들여다 보면 '가'등급의 경우 현재 생존 작가 중 대학교 원로교수를 비롯한 원로작가 및 그 소수의 중견작가 등 정해진 인원의 명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마치 예우의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전시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작가는 '나'등급에 해당되리라 본다. 미술관에 참여하는 작가의 대다수는 이미 현재 미술시장의 갤러리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가 자신의 예술활동의 토대가 갤러리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활동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갤러리와 미술관이라는 서로 다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제한된 인원의 예술가에게 독점이 될 수 있어 예술가들 안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도권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전시 횟수가 적다고 해서 어떠한 예술적 가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이유나 활동의 횟수가 적은 것이 예술가 자신의 확고한 의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지 전시횟수로 단편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 기준이 세분화가 된다 하더라도 숫자가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술분야는 통계적으로 바라보는 숫자의 모순에서 벗어나 숫자가 말하지 못한 가치 있는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예술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행되고 있는 기준이든 개정안이든 무엇인가 발전 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의 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미술관만이 수용할 수 있는 예술 본연이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는 전시와 작품, 그리고 그것을 창작하는 예술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의 횟수로 불가능하리라 본다.

전시 기획자 역시 현존하는 가치 있는 모든 작가를 알 수 없다. 그들 역시 미술시장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갤러리와 미술관의 중복된 작가는 정해져 있고, 결국 소수의 작가들이 취하는 전시 횟수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 문제점은 창작기간이 언제부터인가, 혹은 큐레이터의 활동 개시일을 어디로 볼 것인가와 같은 기간에 대한 모호함이다.

이처럼 예술정책을 수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면 숫자 사이에 숨어있는 가치를 놓치게 되고, 혹은 대략적인 수치를 크게 잡으면 여전히 미궁으로 빠지는 모호함을 유발시키는 어려운 난제가 예술 정책이다. 오히려 예술정책이라는 난제를 너무 쉽게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다 보면 예술정책의 본연의 취지와 의도에 벗어나 계속 숫자놀이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예술분야의 전문적인 평가와 기준은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하며, 실지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와 평가에 신뢰가 부족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인의 양심과 성찰의 부족일 수도 있다.

예술정책은 세금을 통해 그 지역과 국가의 예술을 보존 장려하는 공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그 공적인 자금은 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취약하나 가치 있는 예술, 그리고 미술시장이라는 제도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한 예술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 나름의 예술가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고유한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것은 단지 예술가 예우의 차원을 넘어 동시대적인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은 예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술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공공미술관이 가져야 할 본연의 의무이고 책임인 동시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작가입장

양 철 모(미술작가 믹스라이스)

그동안 작가보수제 논의는 작가와 전시공간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의와 실행이 지지부진했다. 전시공간의 주된 입장은 민간영역에서 전시공간을 운영하며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가보수제 라는 문제까지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한다. 가뜰이나 작가 섭외가 쉽지 않은데, 전시공간의 큐레이터가 작가를 섭외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작가보수제 라는 제도가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다. 한 전시공간의 운영자는 장기적으로는 창작자의 권리인 작가보수제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순차적인 도입과 전시공간 지원과 연계된 제도적 안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창작자의 경제적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물가 상승, 지대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기획전에 다수 참여한 전시 경험이 있지만 창작 행위를 재생산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외국 전시관 5개를 순회하는 전시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어디서 전시를 했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 전시가 끝난 다음에 온 도록이 전부였다.

년도	2007년	2009년	2013년	2017년	2018년
전시공간	국립미술관 (해외 순회전)	사립 미술관 1	서울시 창작공간	사립 미술관 2	공공기관 국제 교류전
전시총예산	?	?	1억	?	?
참여작가	?	7팀	20명	45명	*
전시기간	300일	37일		75일	*
입장료	4000원	2000원	없음	2000원	없음
작가보수	없음	없음	50만원	50만원	30만원

* 자료 조사 기간이 짧아 정확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외국의 전시경험 중 작가로서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 전시 비용 뿐 만 아니라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와 수반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가 책정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전시를 할 경우 전시와 수반된 모든 것들을 옵션

처럼 해야 한다는 인식과 사뭇 다르다. 외국의 사례는 작가보수제 프로덕션피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보편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힘들다. 보편복지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창작자들이 창작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구조는 취약하다. 최근 국립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창작자는 문화의 자본구조에서 가장 아래단계에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의 제도적 실행과 안착은 창작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작가보수제 논의를 통해 기획자, 큐레이터, 평론가 대가 기준의 논의까지 확대 됐으며 창작대가기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반영했다. 또한 용역제공대가 기준과 저작권 사용료의 구분, 신작과 구작, 예술가 등급에 따른 월 기준 단가 제시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 됐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재원 출연 산하기관에 한정 되어 있으며, 사립미술관 등 민간영역은 자율적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창작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 창작자는 제도 미술관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창작자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제도가 사회취약구조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개입해서 개선하려면 민간영역의 자율적용으로 선을 긋는 것 보다. 민간도 자율적으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열어두어야 한다.

국·공립 기관에서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을 수행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영역에서도 창작대가기준(안)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을 통해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지원 한다. 고용된 예술인 뿐 만 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적용된다. 기 실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사회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을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를 창작대가기준(안)으로 적용시켜 보자면, 비영리공간, 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 금액은 자율로 하되, 50%의 창작대가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 제도적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창작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창작대가기준(안)의 취지가 아닐까?

그리고 아래의 논의도 진행,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전시회 산정기준 절차의 모호성을 판단할 기구 필요.

한국예술위원회나 예술인복지재단 아래 산하 기구를 두고 산정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창작자 전시 뿐 만 아니라 공공미술, 사회미술 활동의 시간축척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생애주기 지원사업과 연계돼 제도적 혜택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예술인들이 제도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꼭 행정 인력 보충과 함께!

- 외국 작가의 경우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외국작가는 전시회 산정기준이 모호하며 국내 제도적 인증을 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개선점은 무엇인가?

- 미술관, 비영리 전시공간(행정에서 비영리 전시 공간의 기준이 있는가?)도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있으며, 일주일 단위의 대관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산정기준에 포함할 것인가?

- 작품의 경우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개의 작품이 시리즈로 있는 경우와 회화와 사진과 같이 개별 작품일 경우 저작권 사용료 배분 기준의 모호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정의 내릴 것인가?

- 순회전을 했을 때의 산정기준도 같은가? 순회전인 경우 어떤 산정기준이 필요한가?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을 적용하면 구작 설치시 용역단가, 저작권 단가를 받을 것인가?

- 국·공립에서 민간자본을 통해 전시를 할 경우에도 동일한 미술전시창작대가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협의점이 가능할 것인가?

**발제2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김 성 호
(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

‘미술 창작(전시) 대가 기준(안)’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김 성 호(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

‘2018 미술 창작(전시)를 위한 대가 기준 도입 방안’은 애초 미술계 내에서 ‘미술 작가 보수제(아티스트피)’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고, 2015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가 착수된 이래, ‘시물레이션, 정책 토론회, 전문가 자문, 국공립미술관 시범 운영’ 등 숙려 기간을 거쳐 최근 ‘미술 전시 창작 대가 기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최근 이러한 확대 적용 연구는 국공립미술관 전시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문예위, 예경, 한문연) 등의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전시 지원 사업’에도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특히 미술 작가에게만 적용했던 범주를 미술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필자는 큐레이터협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처럼 의견을 드린다.

첫째,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세 범주의 설정에 대한 의견

작가, 평론가처럼 ‘수익이 창출되는 상근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개별 창작가(혹은 매개자)에게 이 제도는 매우 유효할 수 있으나, 기관 소속 큐레이터에게 이 제도는 무의미하거나, 정보 전달 차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특히 기준(안)에는 사업의 대상인 큐레이터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공립 기관 소속 큐레이터, 사립 기관 소속 큐레이터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를 특별히 분리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구분 적용에 대해서 상세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한 까닭은 국공립 기관 소속 큐레이터일 경우에는 이 제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국공립 기관으로부터 기획 초빙을 받은 객원 큐레이터 또는 문예위, 예경, 한문연 등의 전시지원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독립 큐레이터(이 경우, 사립 기관 소속 큐레이터일 경우에도 해당)일 경우 적용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설명됨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큐레이터에 대한 ‘미술 창작 대가 기준(안)’ 중 ‘편집 저작권’의 한계와 ‘전시권 요청’에 대한 의견

이를 위해서 '용역 제공 대가(인건비, 신작 및 구작 변형 시)'와 '저작권 사용료'라는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출 산식으로 변경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보수 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는 '월 기준단가 × 창작 기간(월) × 참여율(%)'로 구분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일 기준 단가 × 전시 일수 ÷ 참여 작가 수'로 구분한 것은, 산출 근거를 갖기 위한 불가피한 분할 적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제 발제자께서는 '저작권 사용료' 항목에 있어서 큐레이터에게 그 항목을 '편집 저작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가의 저작권에서처럼 '전시권'도 함께 '저작권 사용료'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전시에 국한해서 볼 때 전시권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큐레이터에게 있어 주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셋째, 큐레이터(작가)의 '저작권 사용료'와 '창작비' 항목의 혼합에 대한 의견

한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세목별 정의 및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큐레이터(작가)의 창작비'와 동일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견이 있다. 저작권 사용료 산출 방식에서 '일 기준 단가 × 전시일 수 ÷ 참여 작가 수'로 정하고 이것을 다시 '작가의 창작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창작비는 전시일 수로 산정되는 저작권 사용료에 덧붙여 전시 준비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인건비의 개념도 함께 맞물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해 '창작비'는 '창작에 대한 인건비 + 창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포함하는 '창작에 대한 보수 혹은 지원비'라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 사용료'라는 항목에 '창작비'와 같은 다른 개념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비라는 항목 대신 '저작권 사용료'라는 항목으로만 국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큐레이터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의 등급에 관한 의견

또한 큐레이터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작가에게 해당하는 '가, 나, 다'의 등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독립큐레이터'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시각 예술 전시 15회 이상'을 기획한 경우 '가' 급으로, '시각 예술 전시 5회 이상 15회 미만'일 경우, '나' 급으로, '시각 예술 전시 5회 미만'일 경우 '다'급으로 설정한 예는 독립 큐레이터에게 있어 과도하거나 무모한 적용일 수 있겠다. 독립큐레이터의 경우 1년에 1건의 전시를 맡아 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견해로는 이 경우가 기관 소속의 큐레이터로 있으면서 기획했던 전시 경력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문서에 정확한 언어로 기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법안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련 지침이 명확히 언어로 표기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시각 예술가 인건비 산정 및 등급 기준'에서 작가의 경우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

에서의 초대, 기획전'을 했을 때는, '개인전 2회, 단체전 1회'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기획자의 경우는 '2회'로만 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국내의 비엔날레 급 국제전 기획에서 있어서 기획자가 담당하는 노동력은 매우 지대하다는 점에서 최소 3회로 조정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지점은 미술가의 노동력, 노동의 가치를 기획자의 것과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언급이기보다 큐레이터가 감당하는 특유의 기획 특성을 심분 고려해 달라는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다.

다섯째, 큐레이터의 '인건비 산정'에 예견되는 장점

우선 긍정적인 점은 큐레이터 인건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열악한 예산에 기획자의 인건비로 푼돈만 있어 주면서 국제전을 개최하려는 지자체들의 의욕만 넘치는 우후죽순 사업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수도권과 비교할 때, 문화, 예술의 생산과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상황을 심분 이해할 때, 향후 지역에 양질의 전시를 독려하는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큐레이터 인건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전시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후배 세대에게 미리 자신의 미래를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몇 메이저 급 '국내 유치 비엔날레'의 경우 외국 기획자에게 1억을 오가는 기획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획에는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을 수 있다.

여섯째, 큐레이터의 '인건비 산정'에 예견되는 단점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제전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의 행정 체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먼저 앞서의 경우 유능한 외국 기획자가, 그들의 위상에 비해 적은 기획 비용으로 인해 국내 비엔날레의 감독을 맡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한편, 군소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제전의 경우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획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 노동(창작)'의 기간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결국 행사 몇 개월을 남겨 놓고 기획자와 계약하는 상황마저 있을 수 있다. 혹은 실제로 일하는 기간과 다른 위법한 이중 계약을 할 소지마저 있다. 이 때 기획자가 조직위로부터 늦게 감독 위촉을 받게 됨에 따라, 충분한 기획에 대한 연구 없이 국제전을 맡아 성급히 진행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또한 '참여 작가들에게 창작 노동의 시간'으로 할당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 작가들의 창작 기간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즉 예산을 문제로 기획자가 참여 작가를 늦게 섭외한다면, 이 경우는 '기획자의 인건비 보수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미술창작 대가' 사업의 취지가 외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개최 국제전의 질적 하락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국공립미술관과 같은 공적 문화 예술 기관에서 임시로 일하게 된 '초빙 큐레이터' 혹은 '객원 큐레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획자에 대한 노동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초기의 업무량이 과도할 수도 있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노동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다. 기획의 정성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정량적으로만 접근하여, '기획 노동(창작) 기간' 으로부터 산출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여러 문제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제도 시행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곱째, 큐레이터의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한 의견

전시 행사의 예산 대비, 큐레이터의 인건비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드문 경우이지만,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객원 큐레이터로 일하는 경우, 문예위, 예경, 한문연 등의 전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서 독립큐레이터로서 수혜를 받고 전시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시각 예술 전시 5회 미만'의 신진 작가(다급 예술가)의 개인전 지원 결정액은 5백만 원 이하가 다반사이다. 이 경우 전체 5백만 원 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전시를 예정할 경우, '다'급 예술가의 경우, 인건비로 '3,249,006원'을 책정해야 한다면, 작품 창작을 위한 제작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는 신진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 지원자의 경우 수혜 받을 인건비를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고, 문예위, 예경 등은 사업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인건비 비율을 낮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큐레이터(또는 작가)의 인건비를 일괄 적용하는 이 제도에서 필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경의 경우에도, 특수한 행사의 기획자 공모에는 한 달이 넘는 행사 일정을 요구할 경우도 많은데, 지원액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서 이 지점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산 대비 인건비 책정의 개념이 여러 '예술 지원 기관'과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겹치는 지원 기간은 이중 수혜인가? 지원 방식은 일괄 혹은 분할?

전시 기획을 통해 지원 수혜를 받고 있을 경우, 또 다른 지원 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중 수혜인가? 아니면 양쪽 기관에서 지원을 제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가?

지원액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금액의 일괄 지급인가? 분할 방식인가? 수혜 결정자는 여전히 '악 중 악'인 'e나라도움'을 사용해서 신청해야만 하는가?

아홉째. 그 외 애로 사항

그 외, 이 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애로 사항은 발제자께서 이미 잘 지적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 창작 대가 기준 적용 시 전시 비용 상승으로 전시 횟수 감소 우려
- 특정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될 우려
- 미술 전시 창작 대가 기준 중 용역 제공 대가를 보조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4대 보험 적용 관련 행정처리 업무 증가로 기관에서 난색 표명
-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전시 시 무료로 대여하던 관행이 유지되기를 희망 (소장품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님)

열째, 결론적 고찰

‘미술 창작(전시) 대가 기준 방안’은 예술가들의 창작을 독려, 지원하고 문화 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 제도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자는 작가 인건비나 평론비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고 드릴 의견이 있으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보고, 큐레이터 대가 보수에만 집중해서 의견을 드렸다. 토론자의 지식이 일천하여 ‘미술 창작(전시) 대가 기준 (적용 대상, 산출 산식 등)’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토론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바로잡아 주시길 기대한다.

**발제3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평론가 의견**

김이순(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홍태림(미술평론가)

2018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도입 방안

김 이 순(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1. 제목 자체 변경 요망

- '대가'라는 단어 대신에 '지원금'이라는 단어 사용을 제안합니다. 미술가, 큐레이터, 평론가의 창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적, 감성적 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의 특정 작품(결과물: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평론 글)은 물리적으로 계산 가능한 노동(활동)을 투자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대가'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를 더욱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미술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작가의 창작 대가 기준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해서 금액을 달리 책정했는데, 평론가의 경우는 일괄해서 동일한 원고료 책정이 합리적인가?

-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평론가는 69명입니다. 이 중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평론가와 그렇지 않은 평론가, 원로, 중견, 신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에게 같은 대가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요망합니다.

3. 평론 글의 재사용에 관한 사항

평론 글의 재사용/재게재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고료 지불은 물론, 평론가의 허락을 받아서 재게재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미술평론가들의 원고료와 더불어 미술평론 활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

- 정부에서 미술평론 내지는 미술평론가에 대한 지원 방향 및 목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원고료와 더불어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평론가들과 비슷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인 미술사가들에게는 학술진흥재단을 통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에게는 이러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술관급의 평론 글을 청탁받는 평론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평론가들은 자신의 글을 제대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앞으로 미술평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미술평론가들이 평론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려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의 제도방안이 정부가 창작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예술가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평론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술/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평론의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술가의 지원이 바로 미술평론의 지원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술평론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에 대한 의견 및 질문

홍 태 립(미술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1. 이번 정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은 작가의 아티스트 피뿐 아니라 큐레이터 지급료와 비평 원고료 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창작대가라는 개념으로 다뤄서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라는 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대가 제도가 연구 및 개발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다.

아티스트 피 제도는 2015부터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중순까지도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문체부가 아티스트 피를 국·공립 미술관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갑자기 흘러나왔다. 많은 시각예술인은 이 기사 속의 정보를 보고 도대체 아티스트 피가 어떤 기준과 규모로 돌아가는지 의아해했으며 진행 과정의 폐쇄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나는 2014년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시각예술인 누구나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제도 개발 및 연구 상황을 볼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문체부 측 담당 사무관은 관행대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예술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대답만을 했으며 이조차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¹⁾ 이처럼 작가보수 제도의 진행 과정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책의 당사자인 예술인을 꾸준히 소외시켜왔다. 지금도 시각예술분야의 대다수 예술인은 아티스트 피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국·공립 미술관에서 시범사업 중인지 모른다. 심지어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본인 역시 아티스트 피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어떤 국공립미술관에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최근 도종환 장관이 '문화비전 2030'을 통해서 내세운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하

1) 예를 들어 2015년 11월 25일에 열렸던 작가보수 제도 정책토론회에 대한 공지는 문체부(주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관)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아르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작가보수제도 정책 토론회 공지가 행사가 열리기 이틀 전에 소리도 없이 올라가 있었다. 이 정책토론회의 부실함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장인 이음센터 입구와 1층 내부에는 정책토론회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었고 야외에 있어야 할 입식 홍보관은 5층 토론장 입구에 있었다. 또한 정책토론회 주최 측은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이었던 미술생산자모임에게조차 토론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결국 작가보수제도 정책토론회에는 관계자를 제외하면 10명 정도만이 참여한 행사가 되었다.

여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관성에 얽매이지 말고 아티스트 피가 추진되는 과정을 시각예술인과 폭넓게 공유하고 그에 따른 의견도 수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2. 창작대가 제도를 꾸준히 관리, 보급, 갱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가 꼭 필요하다. 원래 연구 과정에서 아티스트 피의 경우 전담기구 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예술인복지재단, 국립현대미술관 3곳이 연동되는 안이 있기는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티스트 피 제도는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함께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문제에 빨려 들어간 상황이다. 문예위 같은 기존 기구들을 놔두고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며 왜 생기지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기구에 아티스트 피가 넘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문예위와 영역이 중첩되는 장르별 진흥기구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 신설을 통한 자리 만들기와 비효율적 행정을 가속화 시켜 지원예산의 축소나 예술의 통합적 기능과 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티스트 피를 포함해 창작대가 제도는 한국미술진흥재단이 아니라 문예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나서는 것을 통해서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물론, 블랙리스트의 중요 수행기관이며 노후화된 문예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아르코 혁신 TF'는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과 문예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비롯한 10개 조직혁신 과제와 13개 사업혁신 과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문예위의 체질이 시각예술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창작대가 제도는 문예위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하는 일이다.

3. 이번 토론회 전에 받은 자료인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도입방향'에서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을 때 받는 아티스트 피 산출방안을 살펴보니 큰 틀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점도 보였다.

아티스트 피와 제작비는 전시가 열리기 몇 주, 몇 달 전에 최소한 반액이라도 작가에게 지급될 수 있는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회계상 지침 문제로 기재부와 관계된 일일 수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들이 예정된 전시를 위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한 일들을 줄이느라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공공이 관행에 얽매어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 시각예술가 인건비 산정 및 등급 산출산식을 살펴보면 '시각예술가인건비

= 월 기준단가 × 창작기간(월) × 참여율(%)'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창작이 1~2달 안에 다 이뤄진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신작 제작 기간의 최소 및 최대 기간에 대한 다양한 세부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참여율 100% 설정은 고용에 준하는 관계여서 작품의 소유권이 전시회 주최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참여율은 최대 몇 %까지 설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전시 주최 측이 작품을 구입한 것도 아닌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소유권이 참여율 100% 설정만으로 전시 주최 측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작가의 아티스트 피 요율이 계속 갱신되어야 하는 것처럼 큐레이터 창작비와 평론비도 그에 따라서 담당 기구들을 통하여 물가 상승률과 맞추어 계속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평론비 기준치 2만 원의 경우 오랜 기간 국공립 미술관의 원고료가 200자 원고지 1매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크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다. 또한 작가와 마찬가지로 큐레이터나 평론가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전에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인터뷰비, 자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큐레이터 창작비, 평론비 외에 지급할 대가에 대한 기준도 차차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창작대가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위한 추가 예산이 꼭 필요하며 추가 예산 확보 없이 기존 예산안을 조정해서 창작대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에 창작대가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비용 상승으로 전시 횟수가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다.

창작대가 제도는 혜택이나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기준일 뿐이다. 그러니 이 제도를 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

4. 최근 '예대생은 어떤 예술교육과 예술노동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간담회에 참가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 초대된 한국예술종합교 학생들은 대학의 낮은 예술노동 인식으로 인하여 노동착취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점과 교육과정 안에 창작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법률에 대한 것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청년세대가 직접 나서서 만든 작가미술장터 '굿-즈'의 첫 부대행사가 "작가 및 미술인을 위한 저작권 특강"이었던 것은 단순히 미술장터를 열기 전에 필요한 특강을 준비한 것을 넘어서 예술교육의 오랜 부실함을 비판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넘어서 모든 대학, 나아가 여전히 후진적 노동관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모의 노사교섭이 일상화되어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후진적인 교육체계가 아닐 수 없다. 교

육제도 안에서 예술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정식화, 표준화되지 않으면 대학 밖에서 창작대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권을 침해받는 피해자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피의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체부는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예술노동과 관련된 수업이 필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안은 문체부를 넘어서 교육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관리를 중시하는 만큼 이제라도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발제4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심지언(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장)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 기관의 의견

심 지 언(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장)

‘미술작가 보수제’로 출발한 정책적 논의가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으로 확대, 개편된 것은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예술의 창작과 매개영역을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수지급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지 오래이나 아티스트 피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더불어 전시 기획자 및 평론가의 처우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직군에 요구되는 고강도의 전문적 역량 수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 제공과 불공정한 관행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의 마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작대가 기준이 창작자의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인정과 대가지급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창작활동을 예술적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여 노동과 가치 부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기준마련이다. 이는 미술창작 대가기준 안을 바탕으로 현장 주체들의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준마련과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가지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들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애써야 할 것이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부터, 시물레이션,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범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공립미술관의 시범 운영 적용까지 단계적인 검토와 적용을 거쳐 미술전시 창작대가 기준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기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현장의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 보인다.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집행원칙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또한 당연히 배정되었어야 하나 배정되지 않았던 항목과 예산에 대한 요구로써 지원사업에서의 시범적용은 문화정착과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티스트 피와 매개자의 기획비 및 인건비 책정, 평론가의 고료 현실화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들에 있어 도입단계에 있다. 그간의 지원 사업들

이 지원항목을 전시나 프로그램 구현과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로 한정하고 운송비, 대관비, 항공비 등의 실비로 인정 항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원금 내 아티스트피와 사례비, 기획비 책정을 위한 기관들 간의 논의와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벽은 참고 사례와 기준이 부재하고,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창작 대가에 대한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참여 작가에 대한 아티스트피를 지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기획비를 전체 지원금의 10% 내로 인정하는 등의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미술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지급에 있어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그 기준에 대한 현장의 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지침의 마련일 것이다. 그간 창작대가에 대한 예산 배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창작 대가를 필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지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

대가기준안에서 전시 횟수에 따라 예술가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전시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전시의 규모 또는 개인전, 단체전의 구분, 전시를 개최한 곳이 등록 미술관인지 미등록미술관 또는 비영리전시공간인지, 국제적 규모인지 일반 해외 초대전인지가 그 기준이 된다. 대체적으로 수공이 가지만 등록미술관과 미등록미술관 또는 대안공간의 구분에 따른 횟수 산정은 반론이 있을 듯하다. 또한 신작의 출품과 구작 출품의 경우가 동일하게 1회로 산정되는 것은 합리적인가? 작가가 구작을 출품한 경우와 기획자가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한 것이 동일하게 1회로 산정되는 것은 어떤가? 저작권 사용료 산출 산식의 경우, 전시회당 평균 입장료에 1일 평균 유료관람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무료전시에서 저작권 사용료의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예술가 등급 구분과 전시회 산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창작대가 기준의 적용범위를 국공립미술관, 공공기관의 지원제도에서 우선 시행되는 것은 지급문화 형성 및 순차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범 운영을 적용해본 미술관과 달리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적용은 첫 단계인 만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 방안 마련과 함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운영 시 변화나 이슈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 및 프로젝트별 상이한 예산 규모나 성격 등의 고려사항과 예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전지지원사업 중에는 판매를 전제로 하는 전시도 있으며 아트페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빠질 수 없다. 지원 또는 실행해야 하는 기관의 증빙 및 정산의 편의성, 인건비 성격의 처리를 위한 산식 및 양식제공 등 행정적인 업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발급 및 확인도 적지 않은 행정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증빙해야 하는 입장과 확인해야 하는 양측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이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나라도움 시스템과 연동 등을 통해 지원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과 교육, 컨설팅 등 사전 준비에도 예민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행 이후 그 성과나 변화를 함께 점검하고 다음 단계 마련을 위한 공유 및 협의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미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운영이 시행된 만큼(2017.5~12) 그 내용과 성과, 이슈, 한계점,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관들 간의 공유와 논의가 시행 이전 단계에서 선행되기를 바란다.

예산의 증액 없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창작대가 항목 추가로 인한 타예산 항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전시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전체 예산대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원금 내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창작대가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의 출발선 상에 서게 되었으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마련을 통해 지원 사업들이 함께 가야할 것이다.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최 대 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본 토론회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에 대해 제가 속해있는 문예회관 현장의 상황과 보조사업 담당기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술창작 및 전시 지원 사업에서 창작자, 큐레이터, 평론가 등의 작품제공, 전시기획, 용역제공의 사례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점에 대하여 환영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사업 신청 시 다른 공연예술 현장에서는 예술가들의 창작행위의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연예술분야 현황에 대한 인식과 기초 발제자이신 황승흠교수님이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서 이미 제시하신 '적용 시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창작 및 실행 대가지준 관련 공연예술분야 현황

- 현재 공연예술분야에서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창작자나 행위자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연예술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예술창작자 및 행위자의 예술 활동에 대한 각자의 깊이, 폭, 또는 양에 대하여 단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 사업 신청주체의 판단에 따라 그 사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연예술분야 단가연구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사례지급 규정 및 내규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각자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또 상황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술 감독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경우 지원 사업신청 시 예산책정에서 공연기획, 제작사

대표자의 사례 및 이윤을 인정하지 않았던 관계로 암묵적인 불법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막고자 수년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총 지원신청예산 중 5% 내외 이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마련된 미술창작(전시)의 대가기준이 잘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특정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 한정될 수 있는 문제

- 지원 사업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작가가 혜택을 받고 그러한 작품을 관람하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게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특정작가에게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다른 수입원이 많은 사람과의 차별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지원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 소액다건 지원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있어왔지만 특정 예술인에게 집중되어지는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설계 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소요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전시회의 작가가, 책정된 사례비 단가를 인정하지 않아서 관람객의 수요가 많은 전시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적용관련

- 기초발제의 '적용 시 애로사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4대 보험 적용관련 행정처리 업무증가로 기관에서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전국의 문예회관의 수는 현재 23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70%가까이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형태입니다. 이 경우 채용 또는 고용의 문제는 문예회관 담당자가 해결하거나 개인이 수용할 수 없고 본청의 인사담당자가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문예회관의 현실은 전시담당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문예회관에서 기획과 전시를 담당하는 인력자체가 1명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담당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본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지역문예회관 대상 연수단원 지원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1년 단위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 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총액이 올라가게 되어 지자체본청에서는 인건비 총액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의 신청을 꺼려하거나 사업선정 후에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1개월 내외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기간 채용 근로자를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예술인 특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시지원 사업에서의 4대 보험 적용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술창작의 대가기준 도입은 이를 통하여 미술창작자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등 전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아 전시공간의 담당자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전시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예술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공급자와 수요자가 생각이 다를 경우 현실화 되거나 당초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사업의 종료 후 정산절차와 증빙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e나라도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예술지원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경우는 2차에 걸쳐 사전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여 실지 사업의 종료 후 증빙은 문예회관과 공연단체와의 계산서 1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술전시 지원사업의 경우도 이번에 마련된 미술전시 창작대가 기준을 준수하고 불합리한 예산 내역을 사전에 제거한 이후에 전시지원을 하는 단체 또는 창작자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체부의 보조금 관리지침에 반영이 되고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또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최종 미술전시 창작대가에 대한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더욱 많은 미술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토로 미술시장 생태계 전체가 공정하고 발전적인 결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